

서울고등법원

제 1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1나62573 동대표 선거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박 서울 노원구 상계동
피고, 피항소인	위원회 서울 노원구 대표자 위원장
제 1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7. 21. 선고 2011가합308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8.
판 결 선 고	2012. 5.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0.부터 2011. 3. 11.까지 실시한 동대표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사자능력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5면 9행부터 19행까지를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사자능력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의 당사자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본다.

주택법 시행령은 "입주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업무(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제50조의2제1항, 제6항)."고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7호증)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제2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추천한 자 1~2인,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2인,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이 추천한 자 2~3인 이내, 경로회에서 추천한 자 2~3인 이내,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2~3인 이내, 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인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균형있게 위촉한다(제34

조제1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영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관리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개표업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투·개표업무, 회장 및 감사,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 교부,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접수 처리,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로 한다(제36조). 위원장은(위원중에서 호선)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제37조). 영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위원의 출석수당, 선거홍보물 인쇄비,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그 밖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제38조)."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았으나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표준예시, 갑 18호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오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선거관리위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제7조제1항, 제2항). 공동주택선거관리위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제47조제1항제3호). 투표소는 선거인수와 투표장소 여건에 따라 2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제26조제3항).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동주택선거관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제40조). 공동주택선거관리위는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감사선거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감사 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제44조제1항). 대표자 등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선거일로부터 5일 내에 공동주택선거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공동주택선거관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인과 관계인을 불러 소견을 들은 후 기각 또는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64조제1항,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리규약 제14조제2항을 비롯한 제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아파트 단지 내 전체 입주자들을 구성원으로 한 법인 아닌 사단의 하부기관일 수는 있어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하부기관으로 볼 수는 없고, 또 선거관리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관사항도 아니다. 그리고 한 동의 아파트는 집합건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당연히 성립하나(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의 업무집행기관으로 볼 수 있다), ○○○○아파트와 같이 여러 개의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단지 내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공동편익 및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 공동체로서의 법인 아닌 사단을 별도로 조직하지 않는 한 단지 내 전체 입주자들을 구성원으로 한 단체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사자능력을 갖게 된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 전체 입주자들을 구성원으로 한 법인 아닌 사단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실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선거관리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 선거무효나 당선무효소송에 관하여 당사자능력과 피고적격을 부여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입주자대표

회의를 상대로 동대표 선출결의의 무효확인 내지 당선자 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보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무효나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다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동별 대표자의 선출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자격을 다투는 것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그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그러나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받아 선거무효나 당선무효를 결정하면 재선거를 실시하여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게 되므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당선인 결정의 무효확인 내지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적격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사자능력과 피고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실체심리에 나아간 원심은 정당하다.

3. 고쳐 쓰는 부분

먼저 가 원고에게 사퇴를 강요하는 선거규정 위반행위를 하여 이 사건 선거가 무효인지 살피건대, 갑 15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가 원고에게 사퇴를 강요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 원고가 후보에서 사퇴하지 않은 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김성주가 원고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이 사건 선거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살피건대, 갑 16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거 투표일에 아파

트 문틈에 끼워 있는 원고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전량 회수된 것은 아니고 아파트 입주
민 ○○○, ○○○, ○○○이 이를 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김성주
의 유인물 배포 행위가 아파트 101동 주민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함으
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이강원

판사 견종철

판사 이숙연